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132

발의연월일: 2025. 4. 25.

발 의 자:이강일·이재관·김남근

김문수 · 강준현 · 정성호

정준호 • 민병덕 • 김남희

김우영 · 황운하 · 박정현

염태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 상당수가 가맹사업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재료, 설비·용역 등을 필수물품으로 정하고 가맹점사업자 로 하여금 이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 도록 함으로써 얻는 유통마진에 기반하는 성격이 강함.

그러나 이와 같은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모델은 과도한 유통마진을 취하려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갈등을 초래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으로 이어져 가맹사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정작 현행법에서는 필수물품의 정의 등 구체적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가맹사업거래 시장의 온

라인 모바일 전환에도 불구하고 영업지역의 정의에는 이런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맹본부의 직영 온라인몰 판매 등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분쟁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필수물품에 대한 부당한 구매 강요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제12조의8 신설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필수물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원재료·부재료·상품·용역·설비 또는 부동산(이하 "원재료등"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나.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보호,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유지,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과 균질성 유지에 필수적일 것
 - 다.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가공·구축 등에 사용된 기술의 독창 성이나 고유성이 인정될 것
 - 라.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알리고 가맹 계약서에 포함할 것
- 제11조제2항제12호 중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를 "필수물품 또는 임대차"로 한다.
- 제12조의4제3항 중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

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 2.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형태의 영업장을 통하여 가맹 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동일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

제1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8(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 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재료 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부당 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재료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강요로 본다.

- 1. 시중에서 판매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영업표지만 부착하 거나 포장지를 교체하거나 포장의 양을 달리한 경우
-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필수물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4조의2제5항"을 "제12조의8제1항·제3항, 제14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4조의2제5항"을 "제12조의8제1항·제3항, 제14조의2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원재료등의 구입에 대한 거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M251(18-1)
	1 10 (취기가 가수)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3. "필수물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
	는 원재료・부재료・상품・용
	역・설비 또는 부동산(이하
	"원재료등"이라 한다)으로 다
	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수
	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
	<u>될 것</u>
	나.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보
	호,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
	미지 유지, 상품 또는 용
	역의 동일성과 균질성 유
	지에 필수적일 것
	다.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ㆍ
	<u> 가공・구축 등에 사용된</u>

-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 략)
 -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 11. (생략)
 -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13. (생략)

- ③ (생 략)
-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①·② (생 략)
 -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

기술의 독창성이나 고유성
이 인정될 것
라.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
여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알리고 가맹계약서에 포함
· 할 것
 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2
1. ~ 11. (현행과 같음)
12
필수물품 또는 임대차
19 /처체되 가야)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 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 1.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 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 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 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 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세2조제12호 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 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 2.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형태의 영업장을 통하 여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동일한 재

<신 설>

<신 설>

<u>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행</u> 위

제12조의8(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 맹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물품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원재료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 부터 구입하도록 부당하게 강 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재료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제 1항에 따른 부당한 강요로 본다.
- 1. 시중에서 판매하는 동일 또 는 유사한 물품에 영업표지만 부착하거나 포장지를 교체하거나 포장의 양을 달리한 경우
-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필수물품을
 가맹점사업

 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 저 원회는 제6조의5제1항 · 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 조제1항, 제11조제1항 · 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 제2항, 제12조의3제1항 · 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 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 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 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 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 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 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 저희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

추가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세33조(시정조치) ①
<u>제12</u> 조의8제1항·제
<u> 3항, 제14조의2제5항</u>
<u>.</u>
②・③ (현행과 같음)
세35조(과징금) ①

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제1항 · 제2항, 제 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 제 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 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 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u>제12</u> 조의8제1항·제3
항, 제14조의2제5항
<u>.</u>
② ~ ⑥ (혀해과 간음)

② ~ ⑥ (생 략)